

인천광역시 남동구
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1198호

2014년 10월 17일 금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규 칙

- 규 칙 제8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자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

공 고

- 공고 제2014- 1581호 2014년 제6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(수 4
현지구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)
- 공고 제2014- 15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6
(안) 입법예고
- 공고 제2014- 1593호 공인 신조 공고 13
- 공고 제2014- 1594호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임시회 20
부의안건 공고
- 공고 제2014- 1595호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 21
건 공고(수정)
- 공고 제2014- 1601호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 22
건 공고(수정)

고 시

- 고시 제2014- 122호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 23
한지역 지정 고시
- 고시 제2014- 123호 도시관리계획(도로계획시설:도로)결정(변경) 및 25
지형도면 고시
- 고시 제2014- 125호 통·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27
- 고시 제2014- 126호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34
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- 고시 제2014- 127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(변경) 36
정정고시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남동구

편집 : 홍보미디어실

규 칙

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

2014년 10월 17일

남동구 규칙 제864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“라목, 바목의 경우”를 “라목의 경우”로, “제1항의 영업소와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

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□ 개정 이유

-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인 소매인간의 50m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두어야 하나 기준면적 이상의 건축물 및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일부 30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소매인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
- 50m 이상 거리제한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소매점포에 대한 그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및 금연정책에 부응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건축물 내 구내 소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리 제한규정 조정(안 제4조제2항제3호)
 -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중 영업소 1층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 : 30m → 50m
- 구내 소매인으로 영업소간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소매점포 근거규정 폐지(현행 제4조제2항제1호바목 삭제)
- 구내 소매인 지정기준 중 안 제4조제2항제1호바목의 삭제에 따른 관련규정 폐지(현행 제4조제5항제3호 삭제)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-1581호

**인천도시계획시설 「수현지구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」
2014년 제6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**

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“수현지구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0. 10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2. 사업의 종류 와 명칭 : 수현지구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
3. 공고 및 열람기간 : 2014. 10. 10 ~ 10. 25(15일간)
4. 열람내용 : “붙임”과 같음
5. 기타사항

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도시철도2호선 편입토지 목록 (토지-영구취득)

○ 공사명 : 인천도시철도2호선(214공구 일부)

구 분	해당 공구	일련 번호	소 재 지		당초 지번 (분할전)	편입 지번 (분할후)	지목	실제 이용	공부 면적(㎡)	편입 면적(㎡)	지분	㎡당 단가		평균 단가 (원)	평가금액(원)		손실보상 금액(원)	소 유 자		관 계 자			비 고
			구	동								대화	알비		대화	알비		주 소	성명	주 소	성명	권리의 내용	
영구취득	214	1	남동구	만수동	956	956-7	대	대	4.4	4.4	10.08 5 / 916.4				344,000	346,710	345,350	(등)인천광역시 남동구간석동 ***-2번지701 호 (송)인천남동구 남동대로 ***-1,701호(간 석동)	허*				대지권 설정 (1층 107호)
영구취득	214	1	남동구	만수동	956	956-7	대	대	4.4	4.4	9.69 9 / 916.4				330,600	333,130	331,860	(등)인천광역시 남동구간석동 ***-2번지701 호 (송)인천남동구 남동대로 ***-1,701호(간 석동)	허*				대지권 설정 (1층 108호)
영구취득	214	1	남동구	만수동	956	956-7	대	대	4.4	4.4	20.74 / 916.4				778,300	784,320	781,310	(등)인천광역시 남동구서창동 545번지현대모 닝사이드아파트 ***동703호 (송)인천남동구 정수동***-2 (12/2)	나*자	서울특별시영 등포구선유로 ** (문래동6가)	(주)*** 리테 일	전세권	대지권 설정 (1층 109호)
																			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***, 201동 2103호	최*중	가압류	대지권 설정 (1층 109호)	
영구취득	214	1	남동구	만수동	956	956-7	대	대	4.4	4.4	20.4 / 916.4				556,800	561,060	558,930	(등)인천광역시 연수구선학동 352번지뉴서울 아파트***동303 호 (송)인천연수구 선학로101.*** 동303호(선학동 뉴서울아파트)	황*자				대지권 설정 (1층 110호)
영구취득	214	1	남동구	만수동	956	956-7	대	대	4.4	4.4	59.4 / 916.4				737,700	743,350	740,520	(등, 송)인천광 역시 남동구 만 수서로37번길 58, ***호(만수 동, 정석맨션)	정*석	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동 1014-1번 지(북부지점)	남동 농업 협동 조합	근저당 권	대지권 설정 (4층 401호)
영구취득	214	2	남동구	만수동	884-7	884-15	대	대	9.5	9.5	1 / 1	3,580 0.00 0	3,580 .000	3,580 0.00 0	34,010,000	34,010,000	34,010,000	(등)인천광역시 남동구만수동** 번지 (송)경기김포시 철곶면조산재로 ***	박*수				
영구취득	214	3	남동구	만수동	948	948-2 5	대	대	8.3	8.3	1 / 1	3,840 0.00 0	3,910 .000	3,875 5.00 0	31,872,000	32,453,000	32,162,500	(등)서울특별시 영등포구대림동 1***번지 (송)서울영등포 구도림천로21길 *(대림동)	(주)**				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-1582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. 10. 08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규 칙 명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2. 개정이유

하부기관(洞)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자체감사 규칙에 규정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력을 결집하여 구민만족을 극대화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고자 함

3. 주요 개정내용

○ 종합감사 주기 변경 (안 제4조제2항)

- (현행) 종합감사는 기관구분 없이 2년 마다 실시
- (개정) 감사대상 기관별로 종합감사 주기 별도 규정(별표2 신설)
⇒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주기 2년 → 3년으로 변경

4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」 제3조(별표)
-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」 제3조

5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참조 : 감사실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우 405-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/ ☎ 453-2072, FAX 453-207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6. 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: 별첨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10월 일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☐ 제안이유

-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자체감사 규칙에 규정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력을 결집하여 구민만족을 극대화하는 섬김행정 실현

☐ 주요내용

- 종합감사 주기 변경 (안 제4조제2항)
 - (현행) 종합감사는 기관구분 없이 2년 마다 실시
 - (개정) 감사대상 기관별로 종합감사 주기 별도 규정(별표2 신설)
- ⇒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주기 2년 → 3년으로 변경

☐ 본 문 : “별첨”☐ 신·구조문 대조표 : “별첨”☐ 참고자료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(별표)
-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

남동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별표에”를 “별표1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2와 같다. 다만 감사인력,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표1로 하고,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

감사대상기관	감사주기	비고
본 청	2년	
직속기관, 사업소, 구 의회사무국	2년	
동 주민센터	3년	
공단 및 구 출자·출연기관	2년	
국·시·구비 보조단체 및 법인	2년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감사관과 감사담당자) ① (생 략) 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,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이때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<u>별표</u>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. 제4조(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) ① (생 략) 1. ~ 6. (생 략) ② <u>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청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1조(목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 별표1에 ----- ----- 제4조(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<u>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2와 같다. 다만 감사인력,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-1593호

공인 신조 공고

「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」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0. 14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○ 공인 신조 사유

-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공인 신조

○ 공인의 최초사용일 : 2014. 10. 14

○ 신조 공인 수 : 신조(32개)

○ 신조공인명

○ 총무과 신조 공인 목록 (32개)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비 고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구월4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구월4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간석2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간석2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간석2동통합민원2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비 고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간석2동통합민원2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1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1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3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3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4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비 고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4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5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5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4cm × 2.4cm	
신 조 공 인	구월4동장인 구월4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구월4동장인 구월4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비 고
신 조 공 인	간석2동장인 간석2동통합민원1 중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간석2동장인 간석2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간석2동장인 간석2동통합민원2 중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간석2동장인 간석2동통합민원2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1동장인 만수1동통합민원1 중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1동장인 만수1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비 고
신 조 공 인	만수3동장인 만수3동통합민원1 중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3동장인 만수3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4동장인 만수4동통합민원1 중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4동장인 만수4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5동장인 만수5동통합민원1 중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만수5동장인 만수5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비 고
신 조 공 인	남촌도림동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1 종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신 조 공 인	남촌도림동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1 횡		한글전서체 2.1cm × 2.1cm	

※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- 1594호

부의안전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(부의안전의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안 건 명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남동구 도시경관계획(안)에 관한 의견청취안
- 제6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의결안

2. 공고기간

- 2014. 10. 14. ~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시 까지

3. 기 타

- 부의안전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(☎453-2092)에 비치하였으며,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(공람)이 가능합니다.

2014년 10월 14일**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**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- 1595호

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안 건 명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남동구 도시경관계획(안)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
- 제6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동의안

2. 공고기간

- 2014. 10. 14. ~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시 까지

3. 기 타

-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(☎453-2092)에 비치하였으며,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(공람)이 가능합니다.

2014년 10월 14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 - 1601호

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안 건 명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6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동의안

2. 공고기간

- 2014. 10. 14. ~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시 까지

3. 기 타

-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(☎453-2092)에 비치하였으며,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(공람)이 가능합니다.

2014년 10월 14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4 - 122호

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

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,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「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」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4. 10. 14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-6번지 일원
- 면 적 : 233,044㎡

2.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필요시 2년 연장)
- ※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기간을 단축하여 해제 가능. 다만, 국토교통부가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에 종료

3.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

-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
-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

4.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(개발행위허가의 대상)에서 정하는 행위

5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

- 가.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- 나.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
- 다.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- 라.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
- 마.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- 바.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
- 사.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

6. 기타사항

-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(☎ 032-453-2952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4 - 123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453-295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10. 15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의 결정(변경)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08	15	국지 도로	1,590	중1-303호선 고잔동 491-1	대2-21호선 고잔동 161-7	일반 도로		89. 11. 08	고잔 지구
변경	중로	2	108	15	국지 도로	1,415	소1-10호선 고잔동 465-10	대2-21호선 고잔동 161-7	일반 도로			
기정	중로	2	136	15	국지 도로	831	중1-62호선 만수동 68-6	중1-10호선 장수동 산149-1	일반 도로		92. 02. 15	만수 지구
변경	중로	2	136	15	국지 도로	669	중1-62호선 만수동 68-6	소2-1호선 만수동 3-117	일반 도로			
기정	소로	1	10	10	국지 도로	1,180	대3-21호선 고잔동 763-2	소1-7호선 고잔동 390-18	일반 도로		89. 11. 08	고잔 지구
변경	소로	1	10	10	국지 도로	1,180	대3-21호선 고잔동 763-2	소1-7호선 고잔동 390-18	일반 도로			선형 변경

2) 도로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중로 2-108	중로 2-108	•노선해제(일부해제) -L=1,590m → L=1,415m(감 175m) -기점부 위치 변경 - 중1-303호선 고잔동491-1 → 소1-10호선 고잔동 465-10	•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미집행구간의 지형여건 등으로 도로개설이 원활하지 못하며, •우회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자동실효 전 미집행구간 도시계획시설 해제(변경)
중로 2-136	중로 2-136	•노선해제(일부해제) -L=831m → L=669m(감 162m) -중점부 위치 변경 - 중1-10호선 장수동 산149-1 → 소2-1호선 만수동 3-117	
소로 1-10	소로 1-10	•노선해제(선형정리) -L=1,590m ,B=10m (변경없음) -위치 : - 대3-21호선~소1-7호선 (변경없음)	•소래논현도시개발에 따른 일부 해제된 구간으로 가각부 잔여지를 시설해제(변경)

3. 지형(결정)도면 : “별 첨”(게재생략)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4 - 125호

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
인천광역시 남동구 통·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
고시합니다.

- 다 음 -

- 시 행 일 자 : 2014. 11. 1.부터 시행
- 통·반 구역 조정 내역 : “ 첨 부 ”

2014. 10. .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통·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 [간석3동]

통·반 구역 조정현황

구 분	조정전		증감		조정후		비 고
	통	반	통	반	통	반	
남동구	636	3,609	△2	△12	634	3,597	
간석3동	49	257	△2	△12	47	245	

통·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

기 존	조 정 사 유	조정결과
5통 6통 11통	○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▪ 변경내역 : 기존 5통	

통 · 반 조정 세부내역

○ 통 · 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

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
5	2	- 백범로 274번길 - 백범로 276번길 - 백범로 278번길	19	7	8	- 백범로 274번길 - 백범로 276번길 - 백범로 278번길 - 호구포로 885번길, - 호구포로 886번길 - 호구포로 889번길 - 호구포로 897번길 - 백범로 272번길	79	
	3	- 호구포로 885번길, - 호구포로 886번길 - 호구포로 889번길 - 호구포로 897번길 - 백범로 272번길	26			- 호구포로 889번길 8-1 - 호구포로 889번길 8-11 - 호구포로 889번길 8-17 - 호구포로 889번길 8-19 - 호구포로 889번길 11-1 - 호구포로 889번길 16 - 호구포로 889번길 23		
	4	- 호구포로 889번길 8-1 - 호구포로 889번길 8-11 - 호구포로 889번길 8-17 - 호구포로 889번길 8-19 - 호구포로 889번길 11-1 - 호구포로 889번길 16 - 호구포로 889번길 23	34					
5	1	- 재개발 구역	0			- 신설 5통		
	5	- 재개발 구역	0					
	6	- 재개발 구역	0					

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		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		
6	1	- 호구포로 899	9	47	4	- 용천로 176번길 109 (간석동, 이삭아파트) 102동 9-12	47			
		- 호구포로 901				- 호구포로 899				
		- 호구포로 903				- 호구포로 901				
		- 호구포로 907				- 호구포로 903				
- 호구포로 909	- 호구포로 907									
- 호구포로 911	- 호구포로 909									
- 호구포로 915	- 호구포로 911									
11	3	- 만월로 1	7			- 호구포로 915			- 만월로 1	
		- 호구포로 921				- 호구포로 921				
		- 호구포로 917				- 호구포로 917				
6	2	- 재개발구역	0							- 신설6통
		- 재개발구역		- 호구포로 921						
		- 재개발구역		- 호구포로 917						
11	5	- 재개발 구역	0	- 호구포로 915	- 호구포로 911					
		- 재개발 구역		- 호구포로 917						
7	8	- 호구포로 899번길 8, (간석동, 두진아파트) 15 ~ 16호	31	7	7	- 호구포로 899번길 8, (간석동, 두진아파트) 1311~2311호, 1312~2312호, 1313~2313호, 1314~2314호, 15 ~ 16호	87			

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
		신 설 (기존 5, 6, 9통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)		5	1	간석휴먼시아 101동 1~4호	86	
					2	간석휴먼시아 102동 1~4호	99	
					3	간석휴먼시아 103동 1~4호	86	
					4	간석휴먼시아 104동 1~4호	89	
					5	간석휴먼시아 105동 1~4호	89	
					6	간석휴먼시아 106동 1~6호	138	
				6	1	간석휴먼시아 201동 1~4호	102	
					2	간석휴먼시아 202동 1~4호	103	
					3	간석휴먼시아 203동 1~3호 간석휴먼시아 204동 1~2호	104	
					4	간석휴먼시아 205동 1~4호	111	
				9	1	간석휴먼시아 206동 1~4호	104	
					2	간석휴먼시아 207동 1~4호	96	
					3	간석휴먼시아 208동 1~4호	88	
					4	간석휴먼시아 209동 1~2호 간석휴먼시아 210동 1~2호	84	

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
48	1	- 간석로 42번길 5	60	10	1	- 간석로 42번길 5	60	
		- 백범로 352번길 23				- 백범로 352번길 23		
		- 백범로 352번길 25				- 백범로 352번길 25		
		- 경인로 644번길 62				- 경인로 644번길 62		
		- 경인로 644번길 64				- 경인로 644번길 64		
		- 경인로 644번길 72				- 경인로 644번길 72		
		- 경인로 644번길 74				- 경인로 644번길 74		
		- 백범로 358-1				- 백범로 358-1		
		- 백범로 360번길 2				- 백범로 360번길 2		
		- 백범로 360번길 8				- 백범로 360번길 8		
		- 백범로 352번길 5-5				- 백범로 352번길 5-5		
		- 백범로 352번길 5-9				- 백범로 352번길 5-9		
		- 백범로 354				- 백범로 354		
		- 백범로 356				- 백범로 356		
		- 경인로 644번길 6				- 경인로 644번길 6		
	2	- 간석로 42번길 9	82		2	- 간석로 42번길 9	82	
		- 간석로 42번길 13				- 간석로 42번길 13		
		- 간석로 42번길 15				- 간석로 42번길 15		
		- 백범로 352번길 13				- 백범로 352번길 13		
		- 백범로 352번길 15				- 백범로 352번길 15		
		- 백범로 352번길 19				- 백범로 352번길 19		
		- 백범로 352번길 21				- 백범로 352번길 21		
		- 경인로 644번길 69				- 경인로 644번길 69		
	3	- 백범로 360번길 14	68		3	- 백범로 360번길 14	68	
		- 백범로 360번길 16				- 백범로 360번길 16		
		- 백범로 360번길 32				- 백범로 360번길 32		
		- 간석로 42번길 6				- 간석로 42번길 6		

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 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 수	
	4	- 간석로 50번길 6 - 간석로 50번길 6-1 - 간석로 50번길 10 - 간석로 50번길 12	95		4	- 간석로 50번길 6 - 간석로 50번길 6-1 - 간석로 50번길 10 - 간석로 50번길 12	95	
	5	- 백범로 352번길 22 - 백범로 352번길 24 - 백범로 352번길 25 - 백범로 352번길 30 - 백범로 352번길 32 - 간석로 48 - 간석로 50번길 4	66		5	- 백범로 352번길 22 - 백범로 352번길 24 - 백범로 352번길 25 - 백범로 352번길 30 - 백범로 352번길 32 - 간석로 48 - 간석로 50번길 4	66	
49	1	- 용천로 190-3 - 용천로 190-5 - 용천로 190-7 - 용천로 190-11 - 용천로 192 - 간석로 71-12 - 간석로 71-14	65	11	1	- 용천로 190-3 - 용천로 190-5 - 용천로 190-7 - 용천로 190-11 - 용천로 192 - 간석로 71-12 - 간석로 71-14	65	
	2	- 용천로 190-2 - 간석로 61 - 간석로 63 - 용천로 190-6	52		2	- 용천로 190-2 - 간석로 61 - 간석로 63 - 용천로 190-6	52	
	3	- 간석로 71-3 - 간석로 71-7	23		3	- 간석로 71-3 - 간석로 71-7	23	
	4	- 용천로 194-2 - 용천로 194-3 - 용천로 194-5 - 용천로 194-6 - 용천로 194-7 - 용천로 194-8	80		4	- 용천로 194-2 - 용천로 194-3 - 용천로 194-5 - 용천로 194-6 - 용천로 194-7 - 용천로 194-8	80	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4- 126호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453-2952), 건설과(☎453-272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4년 10월 17일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 사항임

2. 위 치 : 남동구 수산동 644-1 일원(경신지구)

3. 도시관리계획[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

나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

다.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

라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: 변경 있음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
☐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3	3	6	국지	263	소3-2 구월동 635-4	- 구월동 644-1	일반 도로	인고98호 (2006.6.5)	경신지구
변경	소로	3	3	6	국지	263	소3-2 구월동 635-4	- 구월동 644-1	일반 도로	인고98호 (2006.6.5)	도로선형 일부변경

☐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고
소로 3-3	소로 3-3	• 도시계획선(도로선형) 일부 변경	• 기존 지장물 저촉구간 및 현황 도로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	

마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: 변경 없음

4. 지형(결정)도면 : “별 첨” (게재생략)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- 127호

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(변경) 정정고시

남동구 제2014-85호(2014.6.12)로 고시된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(변경)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의 건축계획(주차대수, 조경면적)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032-453-295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4. 10. 17.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·명칭(변경없음)
 - 종 류 : 주거환경개선사업
 - 명 칭 :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
 - 면 적 : 79,489.4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(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)
 -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(정자동 217번지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없음)
 - 시 행 기 간 : 인가고시일로부터 ~ 2014년 12월 31일

5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계		79,489.4	100.00	
공동주택 용지	소계	61,137.0	76.91	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
	1BL	22,583.0	28.41	
	2BL	38,554.0	48.50	
정비기반 시설용지	도 로	11,376.4	14.31	무상귀속
	경관녹지	1,934.0	2.43	무상귀속 (2개소)
	소공원	1,503.0	1.89	무상귀속 (2개소)
	노외주차장	1,765.0	2.22	무상귀속
유보지		424.0	0.54	-
종교용지		1,350.0	1.70	공급 255m ² 존치 1,095m ²

나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등 건축계획(정정)

구분		단위	내역						비고		
			1BL			2BL					
공동주택	대지면적	m ²	22,583.00			38,554.00					
	건축면적	m ²	3,373.76			5,438.70					
	지상연면적	m ²	52,437.35			87,170.50					
	지하연면적	m ²	21,823.91			30,526.66					
	건폐율	%	14.94%			14.11%					
	용적률	%	232.09%			226.01%					
	최고높이	층	26			28					
	주차대수	대	지상	기정 : 16(2.5%) 변경 : 16(2.5%)		기정: 642 변경: 636	지상	기정:70(7.5%) 변경:67(7.3%)		기정: 935 변경: 920	주차대수 정정
			지하	기정 : 626(97.5%) 변경 : 620(97.5%)			지하	기정:865(92.5%) 변경:853(92.7%)			
조경면적	m ²	기정 : 9,484.36(41.9%) 변경 : 9,466.47(41.9%)			기정 : 16,571.76(42.9%) 변경 : 16,513.15(42.8%)			조경면적 정정			

6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없음)

구분				단위	내역	
					1BL	2BL
건설 호수	공동 주택	임대	60㎡이하	세대	178	-
			40㎡이하	세대	138	-
		분양	85㎡초과	세대	-	-
			85㎡이하	세대	185	704
			60㎡이하	세대	86	88
		계				587세대

7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가. 도로(변경없음)

규 모				연장(m)	기점	종점	비 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
대로	1	14	35-38	12,450	서해안로	중봉로	일부구간 확폭 (L=181m)
중로	2	448	15-18	257	대1-14	중2-377	구역내 구간
중로	2	377	15	339	소3-52	대1-13	구역내외 구간 포함
소로	1	229	10.5	140	소3-64	중2-377	구역내외 구간포함
소로	2	227	9	115	소3-64	대1-14	구역내외 구간포함
소로	2	56	8~9	251	소3-51	대1-14	구역내외 구간포함

나. 주차장(변경없음)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비고
주차장	노외주차장	간석동 224-80 일원	1,765	기존 주차장 위치변경

다. 녹지(변경없음)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비고
간석 녹지-1	경관녹지	간석동 911-1	656	신설
간석 녹지-2	경관녹지	간석동 912-4	1,278	신설

라. 공원(변경없음)

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 (m ²)	비고
간석소공원-1	소공원	간석동 224-219번지 일원	795	
간석소공원-2	소공원	간석동 224-713번지 일원	708	

8. 첨부 : 관계도서(게재 생략)